名目 및 實効保護率 構造의 長期的 變化

金 光 錫
洪 性 德

▷ 目 次 ◁

Ⅰ. 序 論
Ⅱ. 2個의 名目保護率 推定値
Ⅲ. 두 名目保護率推定値의 延長과 그 修正
Ⅳ. 修正된 名目保護率의 構造的 分析
Ⅴ. 實効保護率의 새로운 推定
Ⅵ. 修正實効保護率構造의 長期的 變化
Ⅶ. 要約 및 結論

Ⅰ. 序 論

世界的으로 거의 모든 나라는 産業保護政策의 일환으로서나 또는 國際收支不均衡문제에 대한 對應策으로서 貿易制限的인 諸措置를 取하고 있는 實情이다. 특히 급속한 工業化를 통해서 經濟開發을 이룩하고자 하는 開發途上國의 경우에는 그러한 貿易制限的인 措置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보통인 것 같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러한 典型的인 例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흔히 使用되는 貿易制限的인 措置 중에는 關稅, 쿼터, 行政的인 輸入制限 및 禁止, 輸入擔保金 預置制, 製品生産에 있어서의 國産化率强調(domestic content requirements) 등이 포함된다.

한 나라에 이러한 貿易制限的인 諸措置가 施行되고 있을 때 그러한 措置의 經濟的 效果를 分析하는 道具로서 名目保護率(nominal rate of protection)과 實效保護率(effective rate of protection)이 널리 活用되고 있다[1]. 여기에 名目保護率은 國內의 貿易制限的인 諸措置下에서 個別品目 또는 産業의 國內生産者價格이 國際市場價格을 超過하는 比率을 나타낸다.

筆者 : 金光錫—慶熙大 政經大敎授(本原稿 執筆當時 KDI 硏究委員), 洪性德—韓國開發硏究院 主任硏究員

* 本論文은 金光錫·洪性德, 『名目 및 實効保護率構造의 長期的 變化』(韓國開發硏究院 硏究·調査報告 第 82-02卷)를 要約한 것임. 따라서 本主題에 대한 細部的 內容과 基礎資料 등에 대해서는 同報告書를 참고하기 바람.

1) 實效保護率과 비슷하게 Bruno(1972)와 Krueger(1972) 등에 의해서 主唱된 國內資源費用(domestic resource cost)의 槪念도 活用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論外로 한다.

이러한 名目保護率은 貿易制限的 措置가 個別商品價格에 미치는 效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指標로 利用될 수 있으나 그 대신 商品生産의 保護效果를 나타내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 주된 이유는 特定産業生産에 대한 實質的 保護程度는 同製品自體에 대한 保護에 의해서만 決定되는 것이 아니고 그 製品生産에 必要한 여러가지 中間財에 대한 保護程度에 따라서도 決定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産業保護를 나타내는 尺度로서는 名目保護率보다는 實效保護率이 월등히 우월하다고 하겠다[2].

그런데 實效保護率은 대체로 몇가지 理論的 假定下에서 部分均衡方式(partial equilibrium framework)에 의해서 推定되는 것이 보통이다. 즉, 實效保護率槪念은 完全競爭的 市場條件, 要素價格의 不變, 中間投入物의 非代替性과 또한 海外의 無限定한 需要(輸出) 및 供給(輸入)彈力性 등을 假定한다. 이러한 假定下에서라면 적어도 交易財部門에 대해 推定된 實效保護率은 産業保護效異를 反映함으로써 産業政策으로 인한 資源配分의 方向을 나타낸다고도 하겠다. 또한 推定된 實效保護率은 保護를 적게 받고도 生存할 수 있는 産業이 效率的이라는 觀點에서 産業別效率性의 指標로서도 活用될 수 있다.

이와 같이 實效保護率의 槪念은 比較的 單純하고 그것은 産業保護의 尺度로서 뿐만 아니라 産業別效率性의 指標로서 活用될 수 있으나 그 實際推定은 容易하지만은 않다. 그 이유는 대체로 各國에서 貿易制限的 措置로서 關稅만을 活用하는 것이 아니고 복잡한 産業支援體制를 갖고 있기 때문에 正確한 名目保護率의 推定이 容易치 않기 때문이다. 결국 名目保護率의 推定을 위해서는 細部品目의 國內價格과 國際價格의 比較硏究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쉬운 作業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實效保護率을 推計한다 하더라도 그런 推定에 使用되는 名目保護率이 信憑性있는 것이 아니면 그 결과도 믿을 수 없는 數値밖에 안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러한 意味에서 本論文에서는 過去 金光錫·웨스트팔(1976)에 의한 1968年의 名目保護率과 南宗鉉(1981)에 의한 1978年 推計値를 연결시켜 比較·檢討하고, 하나의 修正된 名目保護率의 時系列을 推定코자 試圖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名目保護率의 時系列資料를 利用하여 選定된 해(1963, 1970, 1975, 1978)에 대한 實效保護率을 새로이 推計하여 過去의 1968年 및 1978年에 대한 다른 推計値와 比較檢討하고 또한 修正値에 의한 産業保護構造의 變化趨勢를 分析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附言해 둘 것은 本論文에서 다루게 되는 名目保護率과 實效保護率은 주로 國內生産의 國內販賣에 대한 保護程度를 나타내는 指標로서만 그 信憑性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輸出産業에 대한 여러가지 直·間接的인 支援을 통한 補助가 있어 왔으나 資料事情으로 그러한 補助效果의 數量的 推定이 곤란하여 輸出에 대한 實效補助率은 推定할 수가 없었다. 다만 우리나라의 産業支援體制의 性格으로 보아 輸出에 대한 實效保護率은 零에 가까울 것이라는 假定下에서 各細部産業別 總販賣에 대한 平均實效保護率을 계산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産業別 效率性指標로서 活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實效保護率에 관한 대표적 著書로는 Corden(1971)과 Balassa and Associates(1971)를 들 수 있다.

Ⅱ. 2個의 名目保護率 推定値

名目保護率은 個別商品의 國內生產者價格이 同商品의 國際市場價格을 초과하는 比率을 나타내므로 만일 한나라의 輸入制限的인 措置가 法定關稅에 限定되고 또한 그것이 輸入禁止的인 高率의 것이 아니라면 法定關稅에 의해서 測定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開發途上國들의 경우도 비슷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法定關稅率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理由로 인해서 名目保護率의 測定値로서는 不適合하다. 첫째로 우리나라 法定關稅率 중에는 지나치게 高率이기 때문에 輸入禁止的 性格인 것이 있다. 例를 들면 특히 일부 消費財品目에 대한 高關稅率이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본다. 둘째로는 法定關稅率은 設定되어 있지만 그것이 輸出用原資材輸入과 같이 輸入用途에 따라 減免해 주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세째로는 韓國產業의 상당한 部分이 製品을 國際市場價格으로 輸出하고 있으나 同時에 國內市場은 法定關稅뿐만 아니라 數量的規制方式에 의해서 保護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韓國에 있어서 名目保護率의 推計는 直接的인 價格比較를 통해서만이 可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國內價格과 國際價格의 比較를 통해서 信憑할 수 있는 名目保護率을 推定한다는 것은 容易한 일이 아니다. 價格比較를 위해서는 細部產業別 生產額 또는 國內販賣額중 加重値가 큰 品目을 價格比較의 容易性도 고려하여 選定하게 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여 價格比較의 困難性이 완전히 解消되지는 않는다. 國內價格과 國際價格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는 시멘트와 같이 同質的이고 標準化된 品目의 경우를 例外로 하면 무엇보다도 商品의 品質差異에서 오는 價格差異를 어떻게 測定해야 할 것인가 하는 點이 문제된다. 그러나 國產品과 外國製品의 品質差異를 비교한다는 것은 各商品에 대한 專門家가 아니면 容易한 일이 아니며 따라서 대개의 경우 品質差異를 고려치 않고 價格比較를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인 것 같다. 이러한 品質差異의 문제에 더하여 消費財의 경우에 흔한 例가 있는 商標選好(brand preference)의 문제도 있다. 이것은 品質差異는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一般消費者의 特定商標選好로 인해서 그런 商標가 달린 商品의 價格이 그렇지 못한 商品의 경우보다 高價로 去來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 등은 價格比較를 통해서 信憑性있는 名目保護率을 추정한다는 것이 容易한 일이 아님을 설명해 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名目保護率推定을 위해서 價格比較調査를 한 事例가 지금까지 두번 있었다. 그 첫번째 것은 金光錫·L.E.웨스트팔(1976)에 의한 1968年에 대한 調査이며 그 두번째는 南宗鉉(1981)에 의한 1978年에 대한 調査이다. 이 두 調査는 모두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產業誘因制度의 檢討를 위한 名目保護率推定에 그 目的이 있었기 때문에 調査對象品目의 選定基準에서부터 價格比較에 이르기까지 거의 비슷한 方法을 썼다고 판단된다. 즉, 對象品目選定에 있어서는 각기 產業聯關表資料를 기준으로 하여 全交易財產業을 150個部門으로 分類하고 各部門別로 生產 및 輸

出比重이 높고 價格比較가 相對的으로 容易한 品目을 選定하도록 했다. 그리고 選定된 品目에 대한 價格比較作業도 주로 韓國産業銀行의 專門家의 協助를 얻어 이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물론 10年 間隔을 두고 調査했기 때문에 부득이 部門別로 對象品目의 일부改替와 增加가 不可避했다. 두 價格比較調査의 경우 選定된 品目數를 主要産業別로 要約하면 〈表 1〉의 「1968年 當初推計」와 「1978年 當初推計」欄에 各各 提示된 바와 같다. 1968年 價格比較의 경우에는 選定된 品目의 比重은 國內總販賣額 기준으로 약 71%에 해당했으며 1978年의 當初調査의 경우에는 그 比重이 總國內生産의 약 65%를 占하고 있었다.

어떻든 두個의 價格比較調査결과로 얻어진 名目保護率推定値도 〈表 1〉에 主要産業別로 要約 提示되고 있다[3]. 여기에 의하면 全交易財産業平均 名目保護率은 1968年의 14%에서 1978年에는 12.7%로 약간의 下降을 나타냈다. 1968~78年間에 農林水産業部門에서의 높은 上昇으로 인해서 1次産業平均 名目保護率은 16.5%에서 34%로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加重値가 큰 製造業部門의 平均名目保護率이 12.2%에서 6.6%로 거의 半減되고 있기 때문이다. 製造業部門內에 있어서는 加工食品, 飮料 및 煙草, 非耐久消費財와 耐久消費財에 대한 名目保護率이 증가한 反面에 建築材料, 第1~2次 中間財, 機械類와 輸送用裝備에 대한 것은 낮아졌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價格比較를 통해서 名目保護

〈表 1〉 主要産業別 價格比較對象品目數와 名目保護率推定値(1968, 1978)

	價格比較對象品目數(個)			名目保護率推定値(%)	
	1968 當初推定	1978 當初推定	1978 延長推定	1968 當初推定	1978 當初推定
1. 農林水産業	25	52	57	17.0	47.1
4. 鑛業및에너지	25	24	31	8.9	−30.9
第1次産業計	50	76	88	16.5	34.3
2. 加工食品	32	43	57	2.9	32.0
3. 飮料및煙草	8	16	13	2.2	20.9
5. 建築材料	16	13	19	3.9	−10.3
6. 第1中間財	34	68	21	2.8	−4.9
7. 第2中間財	96	153	130	21.0	−2.5
8. 非耐久消費財	56	51	60	11.7	15.6
9. 耐久消費財	17	36	15	38.5	41.2
10. 機械	54	60	26	29.9	15.5
11. 輸送用裝備	11	12	6	54.9	20.7
製造業計	324	452	347	12.2	6.6
全交易財産業	374	528	435	14.0	12.7
(總國內販賣對比加重値, %)	(70.8)	(65.4)[1]	(89.4)[2]		

註 : 1)은 總生産額에 대한 比重임.
2)는 1978年 品目의 加重値이며, 1968年의 경우는 88.7%임.
資料 : 金光錫·L.E. 웨스트팔(1976), 南宗鉉(1981).

3) 品目別로 된 名目保護率推定値의 主要産業別 平均과 全産業平均을 導出하기 위해서는 品目別 國際價格기준 國內販賣額(推定된 名目保護率로 換價)에 加重値를 두어 平均하는 方法을 사용함.

率을 推定했다고 해서 各品目 또는 産業에 대한 名目保護率推定値가 國內價格과 國際價格의 比較結果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사실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價格比較를 통한 信賴할 수 있는 名目保護率의 推定이 어렵기 때문에 品目別로 價格比較結果를 그대로 名目保護率推定値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따라서 價格比較結果로 얻어지는 國內生産者價格이 國際價格(CIF輸入價格기준)을 초과하는 比率을 潛在關稅(implicit tariffs)라고 定義한다면 이런 潛在關稅率을 該當品目의 法定關稅率과 實績關稅率 등과 比較해서 名目保護率推定値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決定過程에서는 各品目에 대한 輸入規制有無, 國內供給 중 輸入比重, 그리고 國內生産 중 輸出比重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된다.

〈表 2〉 名目保護率 推定의 基準別 頻度分布

(단위 : 品目數)

潛在關稅와 法定關稅와의 關係에서 選定된 名目保護率推定値	1968	1978
潛在關稅가 法定關稅를 초과하는 경우		
輸入이 制限되는 경우		
잠재관세율	43	66
법정관세율	2	0
실적관세율	0	1
零	0	1
輸入이 制限되지 않는 경우		
법정관세율	18	25
潛在關稅와 法定關稅가 동일한 경우		
잠재관세율=법정관세율	3	2
潛在關稅가 法定關稅보다 적을 경우		
잠재관세율	124	77
법정관세율	2	7
실적관세율	8	24
潛在關稅率이 零 이하인 경우		
零	124	177
잠재관세율	7	53
법정관세율	3	13
실적관세율	31	29
법정관세율과 零의 加重平均	1	0
潛在關稅率 推定이 不可能한 경우		
零	2	20
법정관세율	5	12
실적관세율	1	28
總 調 査 品 目 數	374	528

註 : 潛在關稅는 國內工場渡 生産者價格을 CIF國際市場價格의 원貨換算額으로 나눈 比率에서 1을 빼고 100을 곱한 것임.

資料 : 1968年은 金光錫·L.E. 웨스트팔, 『韓國의 外換·貿易政策』, KDI, 1976, p. 127을 참조했으며, 1978年은 南宗鉉, 『韓國의 産業誘因政策과 産業別 保護構造分析』, KDI, 1981, pp. 14~18 참조.

사실 〈表 2〉에서는 1968年과 1978年 名目保護率의 推計時에 어떤 기준으로 名目保護率을 선정했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로 同表에서 보면 潛在關稅率이 法定關稅率을 超過하고 또한 輸入이 制限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例外를 제외하면 대개 名目保護率은 潛在關稅率과 같다고 판단하고, 輸入이 制限되지 않는 경우에만 名目保護率을 法定關稅率과 같다고 보았다. 둘째로는 潛在關稅率이 法定關稅率보다 낮을 경우에는 輸出比重과 輸入比重을 고려해서 대부분 潛在關稅率과 같다고 판단했다. 세째로는 價格比較結果 潛在關稅率이 零以下로 나타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대부분 輸出入比重 등을 고려해서 名目保護率을 零으로 假定하든가 또는 實績關稅率이나 潛在關稅率(특히 國內價格統制가 있는 경우)과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째로 이밖에도 品目의 性格上 價格比較에 의한 潛在關稅率推定이 不可能한 경우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理論的 基準下에서 판단하여 名目保護率을 推定하고 있다. 이상은 대체로 名目保護率推定上의 主要原則만을 요약한 것이나 個別品目에 따라서는 例外的인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경우도 있다.

이러한 事實 등은 價格比較를 통해서 名目保護率을 推定하는 데는 可及的 理論的 基準을

活用한다고 하나 역시 主觀的 判斷이 不可避하게 介在되게 됨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따라서 價格比較를 통한 名目保護率推計値가 어떤 경우에나 細部品目에 이르기까지 거의 完全히 信憑할 수 있는 性質의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價格比較를 통해서 名目保護率을 推定하는 것은 다른 좋은 代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Ⅲ. 두 名目保護率推定値의 延長과 그 修正

앞에서 우리는 價格比較를 통한 1968年과 1978年의 名目保護率推定에 관해서 설명했는데 이러한 두개의 推定値는 그 두해와 中間年度에 대한 品目別 國內生產者價格指數와 國際價格指數 및 換率指數만 있다면 서로 連結될 수 있다. 이러한 두 推定値의 連結의 目的은 두 推定値간의 一貫性檢證을 통해서 信賴度를 높이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1968年 또는 1978年當初의 名目保護率을 기준으로 해서 그 중간年度에 대한 推定値도 얻을 수 있다.

1968年 또는 1978年 名目保護率 當初推定値를 기준으로 다른 해에 대한 名目保護率을 推定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다음과 같은 數式으로 表現될 수 있을 것이다.

$$(1+t^n_{ikt})=(1+t^n_{ikb})P^d_{iktb}/(P^w_{iktb}\cdot P^z_{iktb}) \quad \cdots\cdots(1)$$

여기서 t^n_{ikt} : t年의 i細部門에 속하는 k品目에 대한 名目保護率

t^n_{ikb} : 價格比較를 한 基準年(1968 또는 1978)의 i細部門에 속한 k品目에 대한 名目保護率

P^d_{iktb} : 基準年을 100으로 했을 때의 t年에 대한 k品目의 國內生產者價格指數

P^w_{iktb} : 基準年을 100으로 했을 때의 t年에 대한 k品目의 國際價格指數

P^z_{iktb} : 基準年을 100으로 했을 때의 t年에 대한 k品目의 外換率指數(1963年 이외의 해에는 品目別 差異 없음).

위의 數式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68年 또는 1978年 推定値를 기준으로 다른 해에 대한 名目保護率을 推定키 위해서는 基準年의 名目保護率推定이 있는 같은 品目에 대한 國內生產者價格指數와 國際價格指數 및 外換率指數의 時系列資料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時系列資料를 위해서 먼저 可及的 1968年과 1978年에 價格比較가 된 品目으로서 細部門內에서 國內販賣用 生產額기준으로 加重値가 相對的으로 큰 品目을 選定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選定한 品目은 435個에 달했으며 1970年 現在 이런 品目의 加重値는 交易財部門總國內販賣用 生產額의 85%에 달했다.

그런데 이러한 品目選定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비단 名目保護率의 延長推計目的뿐만 아니라 產業聯關表資料의 國際價格기준으로의 換價作業에 必要한 基本資料入手 등을 고려해서 했다[4]. 그러므로 最終的으로 選定된 435個

4) 產業聯關表資料의 國際不變價格으로의 換價方法과 所要資料에 대해서는 Kim(1978) 참조.

品目은 1968年 또는 1978年에 價格比較가 이루어진 品目數와는 약간 差異가 있고 또는 品目別로도 약간의 差異가 있었다. 따라서 우리가 選定한 品目을 전부 1968年 또는 1978年의 價格比較品目과 正確하게 연결시킨다는 것은 不可能했다. 基準年의 品目과 正確하게 一致시킬 수 없는 品目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方法을 擇했다. 첫째, 몇개의 品目에 대해서는 中間年(특히1973)에 대한 直接的인 價格比較를 통해서 名目保護率을 推定하여 基準年數値를 補完하는 方法이다. 그 두번째 方法은 우리가 選定한 品目이 基準年의 名目保護率이 있는 品目과 正確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기준년 價格比較에 포함된 그 代替品이나 類似品目의 名目保護率과 同一하다고 假定한 것이다.

基準年에 대한 品目別名目保護率과 연결될 수 있는 品目을 선정한 다음에는 同品目에 대한 國內生産者價格指數와 國際價格指數, 그리고 外換率指數를 구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資料를 주로 過去 Kim(1978)에서 韓國産業聯關表의 換價作業을 위해서 求했던 資料를 1978年까지 延長推計하여 活用했다. 어떻든 品目別 諸資料가 入手되면 數式(1)에 의해서 기준년 이외의 年에 대한 品目別 保護率推定値를 얻게 된다. 各年에 대한 이러한 品目別 名目保護率은 여러가지 相違한 部門分類方式에 따라서 統合될 수 있다. 여기서는 한 예로서 細部門別(217個 交易財部門)로 統合 또는 加重平均하는 方法을 보여주기로 한다.

$$(1+t_i^n)=\frac{\sum_k[S_{ik}/(1+t_{ik}^n)]\cdot(1+t_{ik}^n)}{\sum_k[S_{ik}/(1+t_{ik}^n)]}$$

$$=\frac{\sum_k S_{ik}}{\sum_k[S_{ik}/(1+t_{ik}^n)]} \quad \cdots\cdots\cdots(2)$$

여기서 t_i^n : i細部門에 대한 名目保護率(年度생략)

S_{ik} : i細部門에 속하는 k品目에 대한 國內販賣用 生産額(國內生産－輸出)

t_{ik}^n : i細部門에 속하는 k品目에 대한 名目保護率

어떻든 이상과 같은 節次에 의해서 우리는 1968年과 1978年의 두 基準値를 延長하는 方法으로 1963年 이후 우리나라 産業聯關表가 作成된 해(1963, 1966, 1968, 1970, 1973, 1975, 1978)에 대한 品目別 名目保護率을 推定했다[5]. 〈表 3〉에서는 먼저 1968年과 1978年 基準値를 延長하는 方法으로 推計된 名目保護率을 基準年에 限해서 主要産業別로 要約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 表에서 1968年 또는 1978年의 경우 當初推定値는 金·웨스트팔(1976)과 南(1981)이 推定했던 것을 나타내며 그 옆에 提示된 '延長推計를 위한 調整値'는 當初推定値를 우리가 選定한 435個 品目分類기준으로 調整하여 統合한 것을 가르킨다. 따라서 이 調整値는 當初推定値와 큰 差異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主要産業別로 보면 약간의 差異는 있으나 그것은 대부분 部門別로 包含된 品目數와 그 分類가 약간 달랐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1968年의 경우를 例를 들어 설명하면 '1978年基準 延長値'가 있는데 이것은 1968年의 名目保護率을 1978年의 "延長推計를

5) 1968年과 1978年의 品目別 名目保護率推定値를 기준으로 다른 해의 名目保護率을 延長推計하는데 所要되는 品目別 國內生産者價格指數와 國際價格指數資料는 金光錫·洪性德(1982) 참조. 換率指數는 1963年의 것을 例外로 하면 〈表 4〉에 提示되고 있음.

위한 調整値"를 기준해서 延長推計한 것을 말한다. 1978年의 경우에는 1968年基準延長値가 이에 해당된다. 이 延長値는 두 基準年의 경우 모두 當初推定値나 또는 延長推計를 위한 調整値와 큰 差異를 나타낸다. 延長推計를 위한 調整値와 1968年 또는 1978年基準 延長値

〈表 3〉 推定基準別 名目保護率推定値의 比較

(단위 : %)

	1968年 名目保護率				1978年 名目保護率			
	當初推定値	延長推計를 위한調整値	1978年基準 延長値	綜合 修正値	當初推定値	延長推計를 위한調整値	1968年基準 延長値	綜合 修正値
1. 農林水産業	17.0	15.4	−10.8	15.0	47.1	48.8	73.8	82.6
4. 鑛業및에너지	8.9	8.4	−44.7	10.3	−30.9	−30.4	30.0	32.2
第1次産業計	16.5	15.1	−13.5	14.7	34.3	38.0	69.8	77.9
2. 加工食品	2.9	2.6	21.0	37.2	32.0	34.0	8.5	48.3
3. 飮料및煙草	2.2	−0.8	51.1	10.4	20.9	22.3	−22.3	−12.7
5. 建築材料	3.9	3.9	−8.4	21.2	−10.3	−7.9	−1.4	17.0
6. 第1中間財	2.8	5.2	−15.1	15.1	−4.9	−9.7	−6.9	12.9
7. 第2中間財	21.0	24.2	9.3	39.4	−2.5	5.6	16.1	40.5
8. 非耐久消費財	11.7	10.5	11.8	37.5	15.6	16.6	−6.9	28.4
9. 耐久消費財	38.5	23.3	86.3	70.9	41.2	48.9	19.6	32.6
10. 機械	29.9	28.3	52.3	62.7	15.5	15.6	1.5	21.0
11. 輸送裝備	54.9	49.3	−10.8	51.1	20.7	30.2	53.6	54.8
製造業計	12.2	11.1	9.5	31.1	6.6	9.3	2.7	25.2
全産業平均	14.0	12.9	−2.9	22.7	12.7	15.9	15.2	36.3

資料 : 〈表 1〉 및 本文 참조.

〈表 4〉 推計基準別 全交易財産業平均 名目保護率의 趨勢分析

	1963	1966	1968	1970	1973	1975	1978
Ⅰ. 推計基準別 平均名目保護率(+1)							
(1) 1968年基準 延長値	1.207	.969	1.129	1.109	.857	1.002	1.152
(2) 1978年基準 延長値	1.075	.840	.971	1.009	.790	1.035	1.159
(3) 綜合修正値	1.328	1.059	1.227	1.248	.972	1.163	1.363
Ⅱ. 實質公定換率指數							
(1) 名目換率(弗當 원貨)	147.9	271.3	276.6	310.7	398.3	485.0	485.0
(2) 國內生産者價格平均指數(1975=100)	17.2	27.0	32.4	40.7	54.5	100.0	130.5
(3) 國際價格平均指數(1975=100)	52.4	54.1	55.4	59.3	79.0	100.0	113.6
(4) 實質公定換率(1÷2×3)	450.6	543.6	473.0	452.7	577.4	485.0	422.2
(5) 實質公定換率指數(1975=100)	92.9	112.1	97.5	93.3	119.1	100.0	87.1
Ⅲ. 推計基準別 純名目保護率(÷1)							
(1) 1968年基準 延長値〈Ⅰ(1)×Ⅱ(5)〉	1.121	1.086	1.101	1.035	1.021	1.002	1.003
(2) 1978年基準 延長値〈Ⅰ(2)×Ⅱ(5)〉	.999	.942	.947	.941	.941	1.035	1.009
(3) 綜合修正値 〈Ⅰ(3)×Ⅱ(5)〉	1.234	1.187	1.196	1.164	1.158	1.163	1.187

資料 : 名目換率數値는 金光錫·L E. 웨스트팔(1976), p. 113에서 取했으며 기타 數値는 本硏究를 위해서 특별히 推定된 것임. 단, 1963年 換率은 同年에 실시된 輸出入링크제로 인한 實質的 複數換率效果를 감안한 것임. 즉, 1963年 換率은 輸入品目別 적용 換率을 輸入額에 加重値를 두어 平均한 것임. Kim(1978) pp. 106~113 참조.

간에는 品目數와 그 分類가 완전히 동일하다. 그러나 이 兩者間을 比較해 보면 1968年의 경우 全產業平均調整値는 12.9%인데 비해서 延長値의 경우는 −2.9%에 불과했으며 主要產業別로도 差異가 상당히 컸다. 1978年의 경우에는 全產業平均基準으로 보면 兩者가 우연히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主要產業別로 보면 역시 현격한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表 4〉에서는 먼저 推計基準別 全交易財產業平均 名目保護率推定値를 1을 加算한 形態로 우리가 名目保護率推定을 한 모든 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1968年基準 延長値 중에서 1968년의 名目保護率과 1978年基準 延長値 중에서 1978年의 것은 〈表 3〉에서의 '延長推計를 위한 調整値'와 같은 것임을 注目할 必要가 있다. 어떻든 여기서 우리는 1968年基準 延長値와 1978年基準 延長値간에는 비단 基準年에 差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選定한 年度에 모두 그 差異가 컸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두 推定値 중 어느 것이 보다 信憑性이 있다고 할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兩者 중 어느 것도 적어도 全交易財產業平均기준으로 볼 때 信憑性이 낮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첫째, 두 延長推計値의 時系列을 볼 때 그 率이 특히 換率이 現實的인 水準에 유지될 수 있었던 1966年과 1973年에는 상당한 負의 水準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둘째는 延長推計된 名目保護率이 豫想外로 상당히 낮은 水準을 유지한 것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名目保護率이 상당한 負의 水準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競爭的인 自由貿易(적어도 輸出自由)을 前提로 하면 理論上 說明하기 곤란할 것이다. 그리고 負의 率과 대부분 10%미만의 낮은 名目保護率 數値는 우리나라의 높은 平均法定關稅率水準과 輸入自由化程度를 고려할 때 도저히 믿기 힘들다고 하겠다. 대체로 輸入에 加重値를 두어 계산된 平均關稅率은 下向偏倚를 갖는다고 하나 우리나라 輸入加重 平均法定關稅率은 1973年까지는 대체로 20%를 上廻하고 있었으며 1974年 이후는 無稅品目인 原油輸入比重의 급격한 增大로 同率이 1975年의 例外를 제외하면 15%內外로 감소되고 있는 데 不過하다[6].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輸入自由化率은 品目數기준으로 볼 때 1978年現在로 약 65%水準에 있었으며 그전에는 自由化率이 더 낮았던 것이다[7].

따라서 우리는 두 延長推計된 名目保護率은 그 信賴性이 문제된다고 판단하고 두 延長値를 統合하는 方向에서 修正하도록 했다. 그 修正方法은 첫째로 어느 延長系列에 있어서나 品目別 名目保護率이 적어도 基準年에는 특별한 例外를 제외하면 負의 水準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조정했다. 當初에 1968年 또는 1978年 名目保護率을 品目別로 推定할 때에는 특별한 例外를 除外하면 負의 水準은 인정치 않고 價格比較결과가 負의 率을 나타내면 많은 경우 零의 保護率을 가정했었던 것이다(前節 참조). 그러나 1968年 調整値基準으로 1978年에 대한 名目保護率을 延長推計하든가 또는 1978年 調整値기준으로 1968年 名目保護率을 延長推計해 보면 延長推計된 결과에 많은 負의 數値가 나타났던 것이다(表 7 참조). 우리는 먼저 어떻게 延長推計하든간에 基準年에는 原

6) 南宗鉉(1981), pp. 6~7 참조. 1978年 중 原油輸入을 除外한 나머지 輸入에 대한 平均法定關稅率은 약 20%에 이르고 있었음.

7) 南宗鉉, 上揭書, p.9.

則的으로 負의 名目保護率은 인정치 않고 負의 水準을 나타낼 때는 零의 率로 假定하고 그것을 基準으로 다시 다른 해의 名目保護率을 上向調整하는 方法을 썼다. 두번째 方法은 例外的인 몇개 品目의 경우 두 基準에 따라 推計된 各年의 名目保護率을 比較檢討하여 經濟理論과 常識에 비추어 보다 맞는 率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名目保護率推定値를 綜合修正한 結果를 1968年과 1978年에 限해서 主要產業別로 要約한 것을 〈表 3〉에서 修正前의 두 延長推計値와 比較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表 4〉에서는 綜合修正値의 全交易財產業平均을 選定된 여러 해에 대해서 修正前 두개의 延長値와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提示된 결과는 修正된 名目保護率이 主要產業別로나 또는 全產業平均基準으로나 모두 修正前의 어느 系列보다도 상당히 높은 것이 그 특징이다.

그런데 한나라의 名目保護率은 內外의 價格變化를 감안한 「패리티」換率이 높고 낮음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고 생각된다. 換率이 現實的인 水準에 있을 때는 그 換率에 따라 國內產業의 價格競爭力이 유지될 것이며 따라서 다른 手段에 의한 높은 保護는 필요치 않을 것이다. 이러한 根據下에서 우리는 綜合修正된 平均名目保護率의 時系列을 「패리티」調整(實質)換率指數로 調整하여 純名目保護率 기준으로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에 의하면 놀랍게도 綜合修合된 平均純名目保護率은 1963年의 약간 높은 수준을 例外로 하면 대체로 16~20%水準의 安定的인 水準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78年基準 延長値를 같은 方法으로 純槪念으로 調整해 보면 거의 모든 해에 상당한 負의 數値를 나타내고 나머지 해에도 거의 零에 가까운 낮은 率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1968年基準 延長値를 조정한 경우는 모든 해에 負의 數値는 면하고 있으나 年度別로 상당한 振幅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역시 綜合修正系列이 적어도 그 相對的인 信賴性에 있어서 다른 系列을 훨씬 앞지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Ⅳ. 修正된 名目保護率의 構造的 分析

앞에서는 두 名目保護率推定値를 綜合하여 修正한 새로운 名目保護率推定値의 導出에 대해서 說明하고 그 綜合修正된 推定値가 다른 推定値에 비해서 信憑性이 높을 것이라고 主張한 바 있다. 本節에서는 綜合修正値의 構造를 다른 推定値의 것과 비교해 가면서 檢討해 보기로 한다.

먼저 〈表 5〉에서는 綜合修正된 名目保護率을 年度別 및 主要產業別로 要約하여 보여주고 있다. 全交易財產業에 대한 平均名目保護率(綜合修正値)은 다른 두개의 推定値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으나 여전히 年度別로 많은 振幅을 나타내고 있음은 前節에서 觀察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러한 年度別 振幅은 그 대부분이 換率水準과 관련되고 있음도 이미 論議한 바 있다. 따라서 〈表 5〉에서는 名目保護率水準의 年度別 差異보다는 主要產業別 相對的 名目保護率의 構造面에 관심을 集中시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主要產業別 構造面에서 두드러진 現象을 檢討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農林水產業을 포함한 第1次產業에

대한 名目保護率은 1968年까지는 계속해서 製造業平均에 비해서 相對的으로 낮은 水準을 유지했다. 1970年에는 高米價政策 등의 시작으로 同率이 다소 높아지고 있으나 1973年에는 國際的인 原資材價格暴騰의 餘波로 대부분의 1次產品의 國際價格이 上昇했기 때문에 다시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1975年부터는 특히 國內의 높은 農產物價格上昇率을 反映하여 1次產業部門에 대한 平均名目保護率은 相對的으로 높아지기 시작하여 1978年에는 다른 主要產業에 대한 것보다 가장 높은 78%(農林水產業平均은 83%)를 示顯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工業化段階를 反映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製造業內에 있어서는 耐久消費財, 機械類 및 輸送裝備에 대한 名目保護率이 대체로 1963年에서 1973年까지는 가장 높은 편에 속했다. 1973年 이후에는 이들 產業에 대한 名目保護率의 絕對水準은 낮아지고 있으나 그래도 機械類의 경우를 제외하면 製造業에 대한 平均率보다 높은 水準을 유지했다.

세째, 中間財의 경우에는 第1次中間財에 대한 名目保護率은 1963年의 경우를 例外로 하면 製造業平均에 대한 것보다 낮았으나 第2次 中間財에 대한 名目保護率은 1963年의 例外를 제외하면 製造業平均에 비해서 항상 相對的으로 높은 水準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第2次中間財는 第1次中間財에 비해서 復雜한 製造過程을 거쳐서 生產되는 것이 보통이며 따라서 國內生產에 대해서 높은 保護를 부여한 것 같이 보인다.

네째, 加工食品에 대한 名目保護率은 1966년의 경우를 例外로 하면 製造業平均에 비해서 항상 相對的으로 높았으나 飮料 및 煙草에 대한 保護率은 1963年의 경우를 例外로 하면 항상 相對的으로 낮았다.

끝으로 建築材料에 대한 名目保護率은 항상 相對的으로 낮았으며 非耐久消費財에 대한 그것은 年度別 振幅이 크기는 하나 대체로 製造

〈表 5〉 年度別 主要產業別 名目保護率의 推定結果(綜合修正値)

(단위 : %)

	1963	1966	1968	1970	1973	1975	1978
1. 農林水產業	26.8	−4.4	15.0	27.7	−6.8	29.3	82.6
4. 鑛業및에너지	34.3	−7.2	10.3	7.1	−6.3	1.1	32.2
第1次產業計	27.1	−4.6	14.7	26.5	−6.8	27.0	77.9
2. 加工食品	54.5	14.5	37.2	37.3	4.3	21.1	48.3
3. 飮料및煙草	45.9	−4.9	10.4	−1.7	−20.7	−12.1	−12.7
5. 建築材料	15.8	5.9	21.2	22.3	−7.0	5.3	17.0
6. 第1中間財	34.1	11.6	15.1	1.4	−9.2	13.6	12.9
7. 第2中間財	35.2	36.8	39.4	33.0	5.8	20.6	40.5
8. 非耐久消費財	28.8	15.8	37.5	26.8	−4.7	0.7	28.4
9. 耐久消費財	58.3	60.3	70.9	60.3	34.0	29.0	32.6
10. 機械類	73.1	34.4	62.7	52.1	16.3	12.2	21.0
11. 輸送裝備	44.3	33.7	51.1	70.4	58.2	29.1	54.8
製造業計	39.4	17.8	31.1	23.9	−0.5	12.7	25.2
全產業	32.8	5.9	22.7	24.8	−2.8	16.3	36.3

資料 : 本文 참조.

業平均과 비슷한 水準을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名目保護率 綜合修正値의 主要産業別 變化趨勢를 요약한 것이나 〈表 6〉에서는 같은 名目保護率을 貿易類型別 産業分類기준으로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즉, 同表에서는 産出品의 市場指向과 輸入競爭度등에 따라 産業을 輸出産業, 輸入競爭産業, 輸入非競爭産業과 輸出入競爭産業 등 네가지로 分類하고 各産業別 平均名目保護率(綜合修正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年次別 比較를 可能케 하기 위해서 217個 交易財産業分類 수준에서 1970年의 輸出과 輸入이 각기 部門別 産出額과 國內總供給에서 차지하는 比重을 기준으로 産業分類를 했다. 따라서 1970年과 時差가 큰 年度의 貿易類型別 産業分類는 正確치 못할 可能性이 크다고 하겠다.

어떻든 表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1966~78年間에는 貿易類型別 平均名目保護率의 構造가 단 하나의 特別한 例外를 除外하면 모두 豫想했던 바와 같은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즉, 그것은 輸出産業과 輸入非競爭産業에 대한 平均名目保護率이 相對的으로 낮고 輸入競爭産業과 輸出入競爭産業의 것은 相對的으로 높은 水準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단 하나의 例外란 1966年 全交易財産業 중 輸入競爭産業의 名目保護率이 다른 産業의 것보다 相對的으로 낮았던 것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同年에 例外的으로 農産物에 대한 名目保護率이 負의 水準을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判斷된다. 그러나 1963年의 貿易類型別 名目保護率構造는 전연 다른 樣相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1970年基準 貿易類型別 産業分類가 1963年에는 그대로 適用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지금까지는 名目保護率의 變化趨勢를 主要産業別 및 貿易類型別로 요약하여 본 것이나 이러한 保護率을 品目別로 보면 상당한 分散

〈表 6〉 貿易類型別 年度別 名目保護率(綜合修正値)

(단위 : %)

	1963	1966	1968	1970	1973	1975	1978
製造業							
輸出産業 (*X*)	46.8	24.4	30.4	16.0	−14.2	−1.2	28.0
輸入競爭産業 (*IC*)	32.5	38.6	54.2	45.7	18.6	30.2	39.2
輸入非競爭産業 (*NIC*)	37.6	6.1	20.8	11.3	−8.3	4.4	12.2
輸出入競爭産業 (*XIC*)	55.4	51.2	56.6	76.0	16.6	22.1	38.0
合計	39.4	17.8	31.1	23.9	−0.5	12.7	25.2
全交易財産業							
輸出産業 (*X*)	28.7	12.8	21.0	9.2	−18.5	1.5	33.5
輸入競爭産業 (*IC*)	29.4	3.5	27.3	38.6	12.0	33.1	53.0
輸入非競爭産業 (*NIC*)	36.3	3.9	17.3	15.5	−10.6	6.6	23.3
輸出入競爭産業 (*XIC*)	49.4	43.9	50.8	73.7	16.2	22.2	38.0
合計	32.7	5.9	22.7	24.8	−2.8	16.3	36.3

註 : 貿易類型은 1970年을 基準으로 分類하였음. 輸出産業(*X*)은 217個交易財産業分類基準에서 國內産出額 중 輸出分이 10%를 초과하는 것, 輸入競爭産業(*IC*)은 國內總供給額 중에서 輸入分이 10%를 초과하는 것, 輸出入競爭産業(*XIC*)은 輸出과 輸入이 모두 10%를 초과하는 것, 輸入非競爭産業(*NIC*)은 各各의 比率이 10% 미만인 것을 表示함. 단, 價格基準은 모두 國際價格임.

〈表 7〉 各推定基準別 名目保護率推定値의 度數分布比較(1968年과 1978年 全交易財品目基準)

(단위 : 品目數)

名目保護率水準 (%)	1968年 基準値		1978年 基準値		綜合修正値	
	1968	1978	1968	1978	1968	1978
0 미만	5	150	165	39	3	4
0	190	0	1	204	95	97
0.1～ 5.0	23	12	29	12	18	19
5.1～ 10.0	20	17	11	15	14	24
10.1～ 20.0	39	35	27	43	39	41
20.1～ 30.1	27	23	31	29	36	33
30.1～ 40.0	22	25	21	18	27	32
40.1～ 50.0	22	23	23	13	39	23
50.1～ 60.0	9	14	32	16	26	16
60.1～ 70.0	20	17	12	5	34	18
70.1～ 80.0	15	20	13	4	20	21
80.1～ 90.0	5	20	9	5	11	20
90.1～100.0	10	11	7	3	17	11
100.1～150.0	19	35	29	11	36	38
150.1～200.0	7	13	11	5	13	17
200.1～300.0	1	14	10	3	6	15
300.1 이상	1	5	3	9	1	5
單純平均(%)	26.5	40.8	29.2	24.4	46.5	54.2
(變異係數)[1]	(0.34)	(0.56)	(0.56)	(0.49)	(0.35)	(0.47)

註 : 1) 標準偏差를 單純平均으로 나누어 구함.
資料 : 本文 참조.

을 나타내고 있음을 注目해야 한다. 〈表 7〉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綜合修正値의 경우 品目別 名目保護率은 最下 零이하에서 最高 300% 이상까지에서 높은 分散度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綜合推定値의 分散度만이 높은 것은 아닌 것 같다. 分散度를 나타내는 變異係數를 계산해 보면 綜合修正値의 경우가 오히려 1968年基準 延長値나 1978年基準 延長値의 경우보다 變異係數가 약간 낮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물론 品目別 綜合修正値의 單純平均은 앞에서의 加重平均値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두 推定値의 경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率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에는 〈表 8〉에서 年度別로 相違한 推定値간의 相關係數(單純)를 계산하여 보여주고 있다. 同表에 의하면 거의 모든 選定된 年에 있어서 綜合修正値와 1968年基準 延長値간에

〈表 8〉 同一年度 名目保護率代案間의 相關係數 (單純)[1]

	68年基準値와 78年基準値	68年基準値와 綜合修正値	78年基準値와 綜合修正値
1963	0.538	0.811	0.774
1966	0.451	0.812	0.667
1968	0.198	0.667	0.590
1970	0.346	0.821	0.586
1973	0.328	0.864	0.532
1975	0.321	0.900	0.482
1978	0.367	0.920	0.464

註 : 1) 相關係數가 0.11 이상이면 95% 이상의 信賴수준에서 統計的으로 有意함.
資料 : 435個 交易財品目의 資料를 기준으로 計算된 것임.

相關係數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反面에 1968年基準 延長値와 1978年基準 延長値간에 相關係數가 거의 모든 해에 있어서 가장 낮았다. 1978年基準 延長値와 綜合修正値간의 相關係數는 위의 두 경우에 중간정도에 位置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綜合修正値가 1968年基準 延長値와 그 구조가 가장 비슷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表 9〉에서는 特定年의 세가지 相違한 名目保護率推定値와 바로 前期의 같은 推定値간의 相關關係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는 特定기준에 의한 名目保護率推定値가 2~3年間에 變化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相關係數는 0.6~0.7水準에 있는 것 같다. 前期의 名目保護率과 特定年의 것간에 推定된 相關係數는 세가지 名目保護率推定値의 경우에 모두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특히 注目되는 것은 어떤 推定値의 경우에나 1973年과 1975年間의 相關係數가 특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1973~75年間에 國際石油價와 主要原資材價格의 暴騰으로 國內外 價格構造上에 급격한 變化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表 9〉 前期와 對比한 各推定基準別 名目保護率의 相關係數[1)]

相關期間	1968年基準値	1978年基準値	綜合修正値
1963 과 1966	0.673	0.793	0.664
1966 과 1968	0.765	0.889	0.757
1968 과 1970	0.810	0.857	0.780
1970 과 1973	0.642	0.815	0.620
1973 과 1975	0.576	0.673	0.507
1975 와 1978	0.756	0.702	0.668

註：1) 相關係數가 0.11이상이면 95%이상의 信賴수준에서 統計的으로 有意함.
資料：435個 交易財品目의 資料를 기준으로 계산함.

V. 實效保護率의 새로운 推定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發表된 두가지 產業別 名目保護率推定値가 대체로 下向偏倚를 갖는다고 판단되어 이 두 推定値를 綜合하여 修正한 새로운 推定値系列을 提示한 바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產業別 名目保護率推定値가 修正된다면 당연히 實效保護率도 바뀌어져야 할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本節에서는 이 綜合修正된 名目保護率系列을 使用하여 1963, 1970, 1975 및 1978年에 대한 產業別 實效保護率을 推計하고 또한 그 결과를 過去의 實效保護率推定値와 比較해 보고자 한다.

實效保護率은 한마디로 保護되고 있는 國內生產者價格에 의한 附加價値가 保護가 없는 狀態의 國際價格附加價値를 超過하는 比率을 나타낸다. 이 경우 國內生產者價格 附加價値는 國內生產者가 실제로 受取하고 支拂한 價格으로 산출되나 國際價格 附加價値는 產出物과 中間投入을 모두 國際價格의 원貨換算額(市場換率에 의함)으로 평가하여 구해야 한다. 이와 같이 實效保護率이란 關稅 등의 諸般誘因政策으로 인해서 國內의 產業別附加價値가 中立的인 自由貿易狀態下에서 얻을 수 있는 附加價値를 超過하는 程度를 測定하는 것이다. 實效保護率의 槪念을 보다 명백히 하기 위해서 特定經濟活動(j)에 대한 實效保護率(t_j^e)의 一般的 公式을 다음에 소개한다.

$$t_j^e=\frac{P_j^d-\sum_i a_{ij}P_i^d}{P_j^w-\sum_i a_{ij}P_i^w}-1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3)$$

$$t_j^e = \frac{P_j^w(1+t_j^n) - \sum_i a_{ij} P_i^w (1+t_i^n)}{P_j^w - \sum_i a_{ij} P_i^w} - 1$$

$$= \frac{t_j^n P_j^w - \sum_i a_{ij} t_i^n P_i^w}{P_j^w - \sum_i a_{ij} P_i^w} \quad \cdots\cdots\cdots\cdots (3)'$$

위의 式에서 P_j^d는 經濟活動 또는 商品 'j'의 國內價格을 그리고 P_j^w는 同商品의 國際價格을 가르킨다. 그리고 a_{ij}는 j商品의 單位當 產出을 위한 中間投入額을 나타내는 投入·產出係數이며 t_i^n은 中間投入商品 'i'에 대한 名目保護率이다. 式(3)은 實效保護率을 國內價格附加價値와 國際價格附加價値간에 百分比差로 表示됨을 보여주고 있으며 式(3)'은 實效保護率을 商品'j'에 대한 名目保護率과 同商品生產에 드는 모든 投入物에 대한 名目保護率의 差異로도 표시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만일 全投入物에 대한 名目保護率이 零이라고 한다면(즉, 모든 i에 대해서 $t_i^n = 0$) 實效保護率은 단지 商品'j'에 대한 名目保護率을 國際價格附加價値比率로 나눈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產出物(j)에 대한 名目保護率과 對比해서 投入物(i)에 대한 名目保護率이 높으면 높을수록 實效保護率이 낮아지는 관계를 보여준다고도 하겠다.

그런데 實效保護率의 槪念은 비교적 단순하고 그 실제적인 推計도 交易財部門만이 存在한다면 비교적 간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商品生產에는 非交易財中間投入物(non-tradable intermediate inputs)이 所要되는 것이 보통이며 따라서 이런 非交易財中間投入物의 處理는 곤란한 문제를 提起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非交易財中間投入이 있는 경우에 實效保護率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Balassa와 Corden의 두가지 標準方法이 適用되고 있다. Balassa方法에 따르면 附加價値는 特定加工活動에 있어서의 附加價値만을 포함하며 非交易財에 대한 保護率은 零이라고 가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Corden方法에서는 保護가 非交易財產業에의 要素給付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非交易財를 공급하는 國內產業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附加價値를 加算하여 계산하고 있다. 즉, Corden方法에서는 實效保護率이 交易財部門의 加工活動뿐만 아니라 非交易財의 誘導生產過程에 있어서의 國內資源에 대한 保護效果를 모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主張한다[8].

實效保護率의 推計方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文獻이 있기 때문에 이정도의 槪念的인 說明에 그치고 실제 實效保護率推計결과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앞에서 論議한 綜合修正된 名目保護率系列과 細部的인 產業聯關表資料를 利用하여 선정된 年度에 대해서 實效保護率을 계산했다. 그 計算에서는 非交易財中間投入物의 處理方法이 다르게 되는 Balassa方法과 Corden方法에 의한 결과를 別途로 算出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가지 附言할 點은 資料事情上 輸出에 대한 實效誘因率은 계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推計한 實效保護率은 產業別 國內販賣에 대한 實效保護率만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우리는 1963, 1970, 1975 및 1978年에 대한 實效保護率을 推計했지만 먼저 〈表 10〉에서는 우리가 推計한 1970年에 대한 主要產業別 實效保護率構造를 金·웨스트팔에 의한 1968年에 대한 推計値와 比較하여 보여 주고 있다.

8) 두가지 方法의 자세한 說明에 대해서는 Balassa and Associates(1971) 附錄 A와 Corden(1971)을 참조할 것.

이와 같은 1968年에 대한 과거의 實效保護率 推計値와의 比較를 위해서는 우리도 同年에 대한 實效保護率을 새로히 推計하는 것이 所望스러웠으나 KDI資料銀行에 收錄된 1966年 또는 1968年의 産業聯關表資料가 다른 해의 것과 같이 細分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同年에 대한 一貫性있는 細部産業別 그 實效保護率推計가 不可能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1968年과 가장 가까운 1970年에 대한 實效保護率 推計値와 1968年値를 比較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年間에는 換率水準에만 變化가 있었을 뿐 産業誘因體制에는 큰 變化가 없었던 것이다.

서로 다른 해에 대한 實效保護率을 比較하는데 있어서는 두해의 換率差異 때문에 發生하는 保護率의 絶對的 水準의 高低를 감안해야 하는 것이 原則이다. 그런데 특히 〈表 10〉에서 1970年推計値를 1968年의 것과 비교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修正推計한 1970年의 名目保護率이 1968年에 대한 金·웨스트팔의 것보다 상당히 높았음을 감안해야 한다. 즉, 綜合修正된 名目保護率기준으로 보면 1970年에 대한 全交易財産業平均 名目保護率은 24.8%로서 過去의 1968年 推定値보다 훨씬 높았다. 따라서 1970年에 대한 全交易財産業平均 實效保護率도 Balassa方法에 따른 경우에는 25.7%로서 金·웨스트팔에 의한 1968年推定値보다 倍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製造業平均實效保護率도 過去의 −1.4%에서 19%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Corden方法에 의한 推計値의 경우에도 대체로 平均實效保護率이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을 뿐 1968~70年間에 비슷

〈表 10〉 1968年과 1970年 實效保護率推定値間의 比較

(단위 : %)

	名目保護率		實效保護率			
			Balassa 方法		Corden 方法	
	1968年 金·웨스트팔推計	1970年本推計	1968年 金·웨스트팔推計	1970年本推計	1968年 金·웨스트팔推計	1970年本推計
1. 農林水産業	17.0	27.7	18.5	32.2	17.9	30.8
4. 鑛業및에너지	8.9	7.1	4.0	3.6	3.5	3.4
第1次産業計	16.5	26.5	17.8	30.3	17.1	28.9
2. 加工食品	2.9	37.3	−18.2	19.5	−14.2	25.1
3. 飮料및煙草	2.2	−1.7	−19.3	−9.5	−15.5	−8.7
5. 建築材料	3.9	22.3	−11.5	44.7	−8.8	33.1
6. 第1中間財	2.8	1.4	−25.5	−27.2	−18.8	−12.8
7. 第2中間財	21.0	33.0	26.1	41.2	17.4	29.5
8. 非耐久消費財	11.7	26.8	−10.5	24.7	−8.0	18.8
9. 耐久消費財	38.5	60.3	64.4	186.5	39.8	100.7
10. 機械類	29.9	52.1	44.2	63.7	29.5	76.9
11. 輸送裝備	54.9	70.4	163.5	174.5	83.2	110.0
製造業	12.2	23.9	−1.4	19.3	−1.1	18.1
全産業計	14.0	24.8	10.5	25.7	9.0	23.7

資料 : 1968年 金·웨스트팔推計는 金光錫·L.E. 웨스트팔, 『韓國의 外換·貿易政策』,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叢書 ⑨, 1976, p.153.

한 變化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主要産業別 保護率構造를 比較해 보면 Balassa方法이나 Corden方法에 의한 결과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든 간에 몇가지 例外를 제외하면 1970年에 대한 우리의 推計결과와 1968年에 대한 金·웨스트팔 推計値간에 적어도 그 相對的 構造面에서는 큰 變化가 없는 것 같다. 製造業部門內에서는 1968年과 1970年에 있어서 輸送裝備, 耐久消費財, 機械類의 第2次 中間財에 대한 實效保護率의 相對的 水準이 높은 것은 如前히 같게 나타나고 있으며 1次産業內에 있어서는 鑛業에 대한 것보다 農林水産業에 대한 平均實效保護率의 相對的 水準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같았다. 또한 1968年과 1970年에 第1次 中間財와 飮料 및 煙草에 대한 實效保護率이 모두 상당한 負의 水準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비슷했다. 그러나 例外的인 것은 加工食品, 建築材料와 非耐久消費財에 대한 實效保護率이 1968年의 負의 水準에서 1970年에는 상당한 正의 水準으로 높아진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에는 〈表 11〉에서 1978年에 대한 우리의 實效保護率推計値를 같은 해에 대한 南宗鉉 推計値와 比較하고 있다. 同表에 의하면 두 推計에 사용된 名目保護率推計値에 상당한 差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판단되지만 同一年度에 대한 두 推計値간에는 상당한 差異가 있었다. 1978年에 대한 우리의 名目保護率修正値가 南宗鉉推計値보다 全般的으로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推計한 全交易財産業에 대한 平均實效保護率이 南宗鉉의 것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두 推計値간에는 産業別 保護率의 相對的構造도 상당히 달랐다. Balassa方法이나 Corden方法에 의한

〈表 11〉 1978年의 두가지 實效保護率推定値間의 比較

(단위 : %)

	名目保護率 (1978)		實效保護率 (1978)			
			Balassa 方法		Corden 方法	
	本推計	南宗鉉推計	本推計	南宗鉉推計	本推計	南宗鉉推計
1. 農林水産業	82.6	47.1	95.9	67.5	92.3	63.7
4. 鑛業및에너지	32.2	−30.9	34.3	−39.7	30.2	−36.5
第1次産業	77.9	34.3	90.0	49.4	86.0	46.4
2. 加工食品	48.3	32.0	12.6	−15.1	14.6	−8.8
3. 飮料및煙草	−12.7	20.9	−43.5	31.4	−39.7	24.4
5. 建築材料	17.0	−10.3	13.5	−17.9	10.5	−13.5
6. 第1中間財	12.9	−4.9	2.6	−30.3	2.1	−23.3
7. 第2中間財	40.5	−2.5	27.2	2.9	35.7	2.5
8. 非耐久消費財	28.4	15.6	38.9	53.3	26.7	32.7
9. 耐久消費財	32.6	41.2	21.4	156.9	14.8	93.1
10. 機械類	21.0	15.5	7.7	39.1	6.2	27.0
11. 輸送裝備	54.8	20.7	120.0	109.9	76.8	58.9
製造業	25.2	6.6	10.4	7.5	13.3	5.2
全産業	36.3	12.7	41.2	26.0	37.6	20.4

資料 : 南宗鉉推計는 南宗鉉, 『韓國의 産業誘因政策과 産業別 保護構造分析』, 韓國開發研究院, 1981, p. 20, p. 36.

推計値를 기준으로 하든 간에 우리의 實效保護率推計値와 南宗鉉推計値간에는 ①1次產業에 대한 實效保護率이 製造業에 대한 平均保護率보다 월등히 높았고 ②製造業중에는 輸送裝備에 대한 保護率이 가장 높았다는 두가지 例外외에는 거의 共通點이 없는 것 같다.

앞에서 1968年과 1970年에 대한 實效保護率의 비교에서는 年度差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產業別 實效保護의 相對的 構造面에서 差異보다는 비슷한 點이 더 많았던 것을 考慮할 때 同一年度(1978)에 대한 두 推計値간에 큰 差異는 意外의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나 前節에서의 名目保護率 構造에 관한 分析에서 우리의 綜合修正된 名目保護率系列이 1968年基準延長値와는 相關關係가 높으나 1978년基準 延長値와는 相關係數가 낮았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充分히 理解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名目保護率推定이 조금 잘못되면 결과적으로 實效保護率構造에 상당한 誤差가 發生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Ⅵ. 修正實效保護率構造의 長期的 變化

綜合修正된 名目保護率系列을 기초로 推計된 우리의 實效保護率 推計値가 過去에 推計되었던 다른 두가지 推計値보다 平均的으로 높고 또한 主要產業別 相對率構造面에서도 특히 南宗鉉박사 推計値와는 상당히 달랐다. 그런데 217個 交易財部門水準에서 우리가 國內販賣에 대한 實效保護率을 年度別로 名目保護率과 相關시켜 본 결과는 〈表 12〉에 提示된 바와 같다. 細部門別 平均 名目保護率(綜合修正値)과 實效保護率간의 順位相關係數는 年次

〈表 12〉 名目保護率과 實效保護率間의 相關係數

	單純相關係數[2]				順位相關係數[2]			
	1963	1970	1975	1978	1963	1970	1975	1978
〈全交易財產業〉								
Balassa方法의 實效保護率								
國內販賣	0.03	−0.06	0.15	−0.09	0.84	0.86	0.80	0.85
總販賣	0.03	−0.07	0.20	−0.07	0.82	0.89	0.87	0.84
Corden方法의 實效保護率								
國內販賣	0.06	0.34	−0.02	−0.02	0.91	0.91	0.89	0.90
總販賣	0.06	0.33	0.04	−0.04	0.88	0.91	0.90	0.89
〈縮小部門〉[1]								
Balassa方法의 實效保護率								
國內販賣	0.76	0.61	0.74	0.69	0.86	0.86	0.89	0.85
總販賣	0.76	0.61	0.77	0.72	0.86	0.88	0.89	0.87
Corden方法의 實效保護率								
國內販賣	0.83	0.78	0.86	0.86	0.90	0.91	0.91	0.89
總販賣	0.82	0.77	0.87	0.84	0.88	0.90	0.90	0.88

註 : 1) 縮小部門은 217個 交易財產業 중에서 實效保護率이 「正」의 경우 1,000%보다 크거나 「負」의 경우 −100%미만의 產業을 除外한 것임.
2) 各年度別로 名目保護率과 行列에 표시된 여러가지 實效保護率간의 相關關係를 나타냄.

別로 差異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모두 0.8보다 높았다. 그러나 두 系列간의 單純相關係數는 極端的인 觀測値의 存在로 인해서 負의 數値를 나타낸 경우도 있고 대체로 낮았다. 그러나 極端的인 觀測値를 제외한 縮小部門의 경우에는 單純相關係數도 상당히 높아지고 順位相關係數도 약간씩 높아지고 있다.

〈表 13〉 國內販賣에 대한 實効保護率의 度數分布

保護率規模		Balassa			Corden		
		1963	1970	1978	1963	1970	1978
以上	以下						
	−100	44	22	13	25	6	6
1,000	∞	12	5	4	10	1	2
500	1,000	8	6	6	8	6	3
200	500	12	19	17	23	13	12
150	200	8	10	6	10	11	10
100	150	12	11	12	8	17	15
90	100	5	3	3	5	3	4
80	90	5	9	3	4	3	
70	80	6	9	5	7	7	4
60	70	4	7	7	9	5	6
50	60	6	4	5	5	12	6
40	50	3	11	6	9	14	13
30	40	3	11	15	5	14	11
20	30	5	12	8	4	19	17
10	20	11	9	9	10	16	8
1	10	4	11	10	6	10	14
−1	1	18	4	6	18	4	6
−10	−1	5	12	15	5	16	19
−20	−10	6	18	21	9	18	29
−30	−20	7	9	22	8	11	17
−40	−30	12	6	9	11	4	7
−50	−40	8	4	6	7	3	6
−60	−50	8	3	6	8	3	2
−70	−60	4	2	2	2		
−80	−70	1					
−90	−80			1	1	1	
−100	−90						
全 部 門							
單純平均		262.9	18.0	−26.2	100.6	56.4	28.4
變異係數[1]		17.7	91.2	60.0	16.0	5.1	13.5
縮小部門[2]							
單純平均		77.7	83.1	62.2	93.8	72.3	51.1
變異係數[1]		2.1	1.9	2.4	1.9	2.0	2.3

註 : 1) 標準偏差를 單純平均値로 나눈 것임.
2) 保護率推定値가 1,000%를 초과하거나, 國際市場價格基準 附加價値가 負로서 保護率이 −100% 미만인 部門을 除外한 것임.

〈表 13〉에서는 推計된 여러 實效保護率의 度數分布와 各推計値의 單純平均値와 變異係數를 보여주고 있다. 同表에서는 1963, 1970과 1978年의 경우만을 例示하고 있지만 推計된 實效保護率의 分散度가 앞에서 제시된 名目保護率의 것보다 훨씬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分布幅의 兩極에는 年度別로 그 數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지만 國際價格附加價値가 零과 비슷하거나 이 이하인 部門들이 있어 分散度를 크게 높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極端的인 數値의 영향을 除外하기 위해서 各推計値에서 國際價格附加價値가 正이고 實效保護率이 1,000%미만인 部門만을 포함하는 縮小된 部門「集團」에 대한 單純平均値와 變異係數도 제시했다. 極端的인 部門의 除去로 인해서 分散度가 상당히 적어지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名目保護率의 分散度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實效保護率의 度數分布에서 볼 때 대체로 Corden方法에 의한 推計値가 分散度가 相對的으로 약간 낮았다. 그 이유는 Corden方法의 경우에 非交易財生産에서 間接的으로 發生하는 附加價値도 包含시켜 計算하기 때문에 Balassa方法에 의한 경우보다 國際價格기준 附加價値가 負의 數値를 나타낸 경우가 훨씬 적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兩方式에 의한 實效保護率推計値간의 順位相關係數는 年度別로 약간의 差異는 있으나 0.9이상의 水準을 나타내고 있으며 따라서 그 順位上에는 큰 差異가 거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表 14〉 年度別 主要產業別 實效保護率의 推計結果(Balassa方法)

(단위 : %)

	國內販賣에 대한 實效保護率				總販賣에 대한 實效保護率			
	1963	1970	1975	1978	1963	1970	1975	1978
1. 農林水産業	31.4	32.2	39.0	95.9	31.1	31.1	36.1	87.3
4. 鑛業및에너지	50.8	3.6	−1.6	34.3	47.2	3.2	−1.4	31.7
第 1 次産業	32.1	30.3	35.6	90.0	31.7	29.1	32.9	82.1
2. 加工食品	−11.3	19.5	−12.5	12.6	−10.8	17.2	−10.3	11.3
3. 飮料및煙草	56.7	−9.5	−26.4	−43.5	56.4	−9.5	−26.3	−43.3
5. 建築材料	3.4	44.7	−2.5	13.5	3.3	42.3	−2.2	11.3
6. 第 1 中間財	35.7	−27.2	−22.8	2.6	34.0	−21.7	−18.8	2.3
7. 第 2 中間財	39.9	41.2	−1.5	27.2	37.9	37.3	−1.2	20.6
8. 非耐久消費財	−19.2	24.7	−21.1	38.9	−18.5	17.9	−11.9	18.0
9. 耐久消費財	76.2	186.5	30.9	21.4	73.8	163.5	15.6	10.8
10. 機械類	30.0	63.7	−3.2	7.7	28.6	60.2	−2.6	6.4
11. 輸送裝備	26.9	174.5	37.9	120.0	25.6	167.6	28.4	111.6
製造業	17.1	19.3	−10.6	10.4	16.5	16.4	−8.0	7.8
全産業	28.4	25.7	10.0	41.2	27.8	22.9	7.9	32.0

資料 : 金光錫·洪性德(1982) 참조.

〈表 15〉 年度別 主要產業別 實效保護率의 推計結果(Corden方法)

(단위 : %)

	國內販賣에 대한 實效保護率				總販賣에 대한 實效保護率			
	1963	1970	1975	1978	1963	1970	1975	1978
1. 農林水産業	30.7	30.8	37.5	92.3	30.4	29.7	34.7	84.4
4. 鑛業및에너지	46.2	3.4	−1.5	30.2	38.8	2.9	−1.3	27.9
第 1 次産業	31.4	28.9	34.1	86.0	30.8	27.7	31.5	78.7
2. 加工食品	13.2	25.1	−10.2	14.6	12.6	22.2	−8.4	12.8
3. 飮料및煙草	47.6	−8.7	−24.4	−39.7	47.3	−8.6	−24.2	−39.5
5. 建築材料	7.9	33.1	−2.0	10.5	7.9	31.3	−1.7	8.9
6. 第 1 中間財	38.8	−12.8	−16.9	2.1	35.8	−10.3	−13.9	1.8
7. 第 2 中間財	31.8	29.5	10.9	35.7	29.0	26.8	8.7	26.9
8. 非耐久消費財	2.5	18.8	−15.6	26.7	2.4	13.6	−8.6	11.3
9. 耐久消費財	121.0	100.7	22.1	14.8	117.1	66.6	11.2	7.4
10. 機械類	36.9	76.9	−2.6	6.2	35.3	72.8	−2.1	5.2
11. 輸送裝備	23.0	110.0	27.2	76.8	21.9	105.6	20.3	41.0
製造業	25.9	18.1	−5.0	13.3	24.4	15.3	−3.8	9.5
全産業	29.8	23.7	10.3	37.6	28.8	21.1	8.1	28.3

資料 : 金光錫·洪性德(1982) 참조.

다음에 〈表 14〉에서는 Balassa方法에 의한 實效保護率의 推定結果를 年度別 및 主要產業別로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表 15〉에서는 Corden方法에 의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兩方法에 의한 결과에는 年度別 및 主要產業別로 保護率의 相對的 水準面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편의상 Balassa方法에 의한 결과를 기준으로 主要產業別 實效保護率構造의 특징과 그 變化추세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검토에 앞서 또 한가지 指摘해 둘 것은 두 表에서 모두 國內販賣에 대한 實效保護率과 함께 總販賣에 대한 實效保護率을 제시하고 있는데 後者는 輸出에 대한 實效保護率이 零일 것으로 假定하여 國內販賣에 대한 實效保護率과 加重平均하여 얻은 數値인 것이다. 따라서 總販賣에 대한 實效保護率은 國內販賣에 대한 保護率보다 약간씩 낮아지고 있는데 그 낮아지는 程度는 年度別 및 主要產業別로 總販賣에 대한 輸出比重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國內販賣에 대한 實效保護率을 기준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實效保護率은 年度別로 상당한 振幅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도 示唆한 바와 같이 그 대부분이 實質換率水準의 變化에 기인되는 것이다. 따라서 年度別로 實效保護率의 絕對的 水準의 차이는 別로 의미가 크지 않으며 產業別保護率의 相對的 差異가 重要한 意味를 지닌다고 할수 있다.

둘째로, 名目保護率의 경우와 같이 農林水產業을 包含한 1次產業의 平均保護率이 製造業에 대한 平均보다 항상 높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1次產業內에서는 1963年의 경우 鑛業部門에 대한 높은 保護率을 例外로 하면 언제나 農林水產業部門의 높은 保護率 때문에 그 1次產業平均保護率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1978年의 農林水產業部門의 平均實效保護率은 96%로서 製造業 중 輸送裝備에 대한 것 다음으로 가장 높은 率을 나타냈던 것이다.

세째로, 製造業內에서는 耐久消費財에 대한 實效保護率이 1963年에서 1975年까지 그리고 輸送裝備에 대한 것은 1963年을 예외로 한 모든 해에 계속해서 相對的으로 가장 높았다. 이것은 耐久消費財에 대한 實效保護率이 最近에 와서 주로 電子工業製品에 대한 保護率의 감소에 主導되어 낮아지고 있으나 輸送裝備에 대한 保護는 우리나라 自動車工業이 育成되기 시작한 이후에 引上되어 아직 높은 保護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機械類에 대한 實效保護率은 1963~70年間에는 相對的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1975年 이후는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네째로, 名目保護率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第1次 中間財에 대한 것보다 그 加工度가 높은 第2次 中間財에 대한 實效保護率이 항상 더 높았다. 그러나 第2次 中間財에 대한 保護率도 1963~70年間에는 全產業平均보다 相對的으로 높았으나 1975~78年間에는 相對的으로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특기할 것은 第1次 中間財에 대한 保護率은 1963年의 경우를 例外로 하면 負의 水準이거나 零에 가까운 水準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飮料와 煙草에 대한 實效保護率은 1963年에 상당히 높았으나 그후에는 계속 負의 水準을 기록하고 있다. 建築材料에 대한 保護率은 1970年의 경우를 제외하면 相對的으로 낮은 水準을 나타냈다. 끝으로 加工食品과 非耐久消費財에 대한 保護率은 1963年과 1975

年에 負의 數値를 나타내고 1970年과 1978年에는 상당한 正의 水準을 나타냄으로써 일정한 추세없이 變動되고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는 實效保護率推計値를 主要產業別로 分類하여 그 長期的 變化추세를 검토해 보았는데 〈表 16〉과 〈表 17〉에서는 같은 實效保護率推計値를 產業의 市場指向(market orientation) 및 輸入과의 競爭關係를 고려한 貿易類型別 分類에 따라 要約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貿易類型別 產業分類는 第Ⅳ節에서의 名目保護率에 관한 說明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기준에 입각하고 있으며 1970年 輸出入比重을

〈表 16〉 貿易類型別 實效保護率推計値 比較(Balassa方法)

(단위 : %)

	國內販賣에 대한 實效保護率				總販賣에 대한 實效保護率			
	1963	1970	1975	1978	1963	1970	1975	1978
製造業								
輸出產業 (*X*)	22.9	7.7	−37.5	22.7	19.6	4.3	−18.8	9.2
輸入競爭產業 (*IC*)	6.1	93.7	20.5	21.8	5.9	90.5	17.3	18.7
輸入非競爭產業 (*NIC*)	14.9	−5.6	−24.2	−3.1	14.8	−5.4	−22.5	−2.8
輸出入競爭產業 (*XIC*)	73.6	135.4	16.5	28.9	69.6	101.4	9.3	15.1
合計	17.1	19.3	−10.6	10.4	16.5	16.4	−8.0	7.8
全交易財產業								
輸出產業 (*X*)	−4.2	−5.6	−22.1	38.3	−3.7	−3.3	−11.3	17.0
輸入競爭產業 (*IC*)	29.4	48.3	39.4	62.5	29.2	47.6	35.5	55.6
輸入非競爭產業 (*NIC*)	31.8	8.7	−9.2	24.0	31.4	8.5	−8.7	22.4
輸出入競爭產業 (*XIC*)	74.2	123.2	16.7	29.1	69.1	90.6	9.4	15.3
合計	28.4	25.7	10.0	41.2	27.8	22.9	7.9	32.0

資料 : 金光錫·洪性德(1982) 참조.

〈表 17〉 貿易類型別 實效保護率推計値 比較(Corden方法)

(단위 : %)

	國內販賣에 대한 實效保護率				總販賣에 대한 實效保護率			
	1963	1970	1975	1978	1963	1970	1975	1978
製造業								
輸出產業 (*X*)	50.1	5.4	−26.2	17.8	41.7	3.0	−13.1	6.9
輸入競爭產業 (*IC*)	14.5	63.5	27.4	29.4	13.3	61.3	22.7	24.9
輸入非競爭產業 (*NIC*)	20.9	−0.4	−20.0	−2.0	20.8	−0.4	−18.6	−1.9
輸出入競爭產業 (*XIC*)	78.3	79.1	11.2	21.6	70.9	53.4	6.1	9.4
合計	25.9	18.1	−5.0	13.3	24.4	15.3	−3.8	9.5
全交易財產業								
輸出產業 (*X*)	7.1	−4.4	−16.3	28.7	6.2	−2.6	−8.3	12.3
輸入競爭產業 (*IC*)	29.5	43.8	39.6	59.3	28.9	43.1	35.1	52.1
輸入非競爭產業 (*NIC*)	32.6	10.2	−8.0	22.4	32.1	9.9	−7.5	20.9
輸出入競爭產業 (*XIC*)	77.2	73.8	11.4	21.8	64.1	49.2	6.2	9.5
合計	29.8	23.7	10.6	67.6	28.8	21.1	8.1	28.3

資料 : 金光錫·洪性德(1982) 참조.

기준으로 작성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年次別 比較를 위해 1970年比重을 기준으로 한 分類를 했기 때문에 1970年 이외의 해에는 그 分類가 꼭 正確치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의 例에 따라 Balassa方法에 의한 結果値(表 16 참조)를 중심으로 논의해 본다. 製造業만의 分類에 의하거나 또는 全交易財產業의 分類에 의하던간에 1970年과 時差가 相對的으로 큰 1963年과 1978年의 경우에는 약간의 不一致가 있으나 대체로 우리나라의 誘因體制는 輸出產業과 輸入非競爭產業에 相對的으로 낮은 保護를 하고 反面에 輸入競爭產業과 輸出入競爭產業에는 상당히 높은 保護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國內販賣에 대한 實效保護率에 의하거나 또는 總販賣에 대한 保護率에 의하던간에 모두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Balassa方法과 Corden方法에 의한 두가지 결과에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1963年과 1978年의 경우에는 輸出產業과 輸入非競爭產業에 대한 保護率이 相對的으로 낮고 輸入競爭產業과 輸出入競爭產業에 대한 保護率은 높다는 一般的 傾向에 비추어 약간의 不一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1970年比重기준 貿易類型別 產業分類가 時差가 큰 두 해에 와서는 不正確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Ⅶ. 要約 및 結論

貿易制限的인 諸措置를 포함한 國內產業保護構造의 分析을 위해서는 產業別 名目保護率과 實效保護率의 推定이 不可避하게 요구된다. 이런 要求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過去에 相違한 硏究者들에 의해서 1968年과 1978年에 대한 名目 및 實效保護率의 推計와 分析이 있었다.

本硏究에서는 처음에 品目別 國內生產者價格指數 및 國際市場價格指數와 換率指數 등의 資料를 이용하여 過去에 推定되었던 두 해의 名目保護率을 連結하여 延長시키는 方法을 考案하고 그 方法을 통해서 그 中間年度뿐만 아니라 60年代初 이후의 品目別 및 細部產業別 名目保護率의 時系列을 구하려고 했다. 그러나 1968年과 1978年의 名目保護率推定値를 品目別 國內外價格資料를 이용하여 連結시켜 본 결과 두 推定値간에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差異와 모순이 많이 露呈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1968年基準 延長推計値와 1978年基準 延長推計値를 品目別 水準에서 일일이 檢討하고 修正하여 하나의 綜合修正値를 구하고 그 時系列을 推計했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名目保護率의 綜合修正値는 사실상 過去에 推定되었던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으므로 實效保護率도 달라질 것을 豫想하여 完全한 產業聯關表資料를 입수할 수 있는 몇개년에 대해서는 產業別 實效保護率도 推計했다.

우리는 7個年(1963, 1966, 1968, 1970, 1973, 1975, 1978)에 대한 品目別 및 細部產業別 名目保護率 綜合修正値를 推定하고 이런 綜合修正値를 이용하여 4個年(1963, 1970, 1975, 1978)에 대한 細部產業別 實效保護率을 推計했다. 그런데 實效保護率推計에 있어서는 資料事情으로 國內販賣에 대한 實效保護率만을 推計했다. 總販賣(國內販賣+輸出)에 대한 實效保護率을 推計하기 위해서는 輸出에 대한 保護率이 零일 것으로 假定하여 加重平均하는 方法

을 썼다. 그리고 非交易財部門의 取扱方法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 Balassa方法과 Corden 方法을 모두 사용하여 實效保護率을 계산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하여 數個年度에 걸쳐서 細部產業別 名目保護率과 實效保護率을 推計한 다음에는 먼저 우리의 綜合修正値에 立脚한 名目保護率과 實效保護率構造를 過去에 推定되었던 1968年 및 1978年에 대한 推計値와 比較·分析했다. 이러한 比較結果에 의하면 첫째로 우리의 綜合修正 名目保護率과 그에 立脚한 實效保護率의 平均水準이 過去의 어떤 推計値보다도 相對的으로 높은 것이 特徵이었다. 둘째 特徵은 우리의 綜合修正 名目保護率과 그에 立脚한 實效保護率이 그 構造的인 面에서 볼 때 1968年에 대한 金·웨스트팔推計結果와는 상당한 類似點을 갖고 있으나 1978年에 대한 南박사 推計結果와는 類似點이 그리 많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의 綜合修正 名目保護率과 實效保護率 推計結果에 따른 우리나라 產業保護構造의 特徵과 그 長期的 變化方向은 다음의 몇가지를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農業部門에 대한 높은 保護로 인해서 1次產業에 대한 保護가 製造業에 대한 것보다 相對的으로 높아왔을 뿐만 아니라 最近에 와서 높아지는 정도가 더욱 擴大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둘째는 우리의 工業發展段階를 反映하듯이 製造業內에서는 약간의 例外는 있으나 耐久消費財, 輸送裝備, 一般機械類에 대한 保護가 대체로 70年代 中盤까지는 相對的으로 가장 높았으나 그후는 耐久消費財와 機械類에 대한 保護는 相對的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째로는 우리나라 中間財工業에 있어서는 第1中間財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保護를 해 왔으나 加工度가 높은 第2中間財에 대해서는 높은 保護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째로는 우리가 期待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대체로 輸出產業과 輸入非競爭產業에는 相對的으로 낮은 保護를 하는 反面에 輸入競爭產業과 輸出入競爭產業에는 相對的으로 높은 保護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本硏究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結論을 몇가지 提示해 본다.

첫째로, 本硏究가 示唆하는 것은 眞實로 믿을 수 있는 產業別 名目保護率과 實效保護率의 推計가 容易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過去에 이룩된 두가지 推計値를 綜合修正하는 作業을 했지만 우리의 結果도 完全한 것이라고 壯談할 수 있는 根據는 전연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方向에 대한 보다 나은 硏究가 계속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우리나라의 名目保護率과 實效保護率이 全交易財產業平均기준으로 볼 때 年次別로 심한 振幅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國內外價格「패리티」를 조정한 實質換率이 安定的으로 유지치 못한 데서 發生하는 것 같다. 따라서 앞으로는 實質換率이 安定勢를 保障할 수 있는 換率 또는 物價政策이 產業保護水準의 安定化와 나아가서는 國內產業의 安定的인 國際競爭力유지를 위해서 重要할 것으로 보인다.

세째로, 우리나라의 產業保護構造를 검토할 때 細部產業別로 保護率水準의 差等이 너무 甚하며 또한 일부 產業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保護가 과연 政策的 意圖와 一貫性을 갖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

서 앞으로는 産業別保護水準이 可及的 均等해지도록 關稅率의 差等을 줄일 뿐만 아니라 輸入開放의 점차적인 擴大를 통해서 産業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保護를 줄이도록 할 것이 요청된다고 본다. 이러한 措置없이 産業別로 크게 差等的이고 높은 保護를 계속 유지한다면 궁극적으로 産業의 自發的 能率向上을 통한 國際競爭力向上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參 考 文 獻◁

金光錫·L. E. 웨스트팔, 『韓國의 外換·貿易政策』,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叢書 [9], 1976.

金光錫, 『韓國工業化패턴과 그 要因』,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叢書 [36], 1980.

金光錫·洪性德, 『名目 및 實效保護率構造의 長期的 變化』, 韓國開發研究院 研究·調査報告書, 1982.

南宗鉉, 『韓國의 産業誘因政策과 産業別 保護構造分析』, 韓國開發研究院 研究·調査報告書, 1981.

Balassa, Bela, *The Structure of Prote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Baltimore, M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1.

Corden, Warner M., *The Theory of Protection*, Oxford: Clarendon Press, 1971.

Kim, Kwang Suk, "Deflation of Korean Input-Output Data into 1968 Constant Prices", KDI, 1978.

Westphal, L.E. and Kwang Suk Kim, "Industrial Policy and Development in Korea,"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No. 263, Washington, D. C.: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August 1977.